

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
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6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이사(공기업담당관)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28조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다.

부

칙

② (경과조치)를 삭제한다.